

<신설>

[일반원칙]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(안)	사유
항진균제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급여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도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칸디다감염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 또는 Fluconazole 또는 Itraconazole 경구제 투여시 인정 2) Echinocandin계 약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, 이외에는 타 항진균제(Fluconazole 등)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인정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경우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) 중증 환자 또는 나) 최근에 azole 투여 경험이 있었던 환자 <p>* 단, Fluconazole 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Fluconazole로 변경 투여하는 것이 권장됨.</p> 나. 호중구 감소성 발열의 경험적 치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Itraconazole 주사제 또는 Caspofungin 투여시 인정 2) 투여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)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 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인정 나) 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-7일 이내로 인정 	<p>-개별 약제별로 설정되었던 항진균제 급여기준을 [일반원칙]으로 통합, 정리함으로써 급여기준을 단순화하고 명확히 하여 환자치료에 적정을 기함.</p> <p>-Echinocandin계 약제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훈기존주) 사용 후 2차 투여시 인정하였으나, 4대증증 보장강화 차원에서 대한감염학회 요청을 수용하여 '침습성 칸디다감염'에서 1차로 투여</p>

- 1 -

	<p>다.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 또는 Voriconazole 또는 Itraconazole 투여시 인정 2) Caspofungin은 타 항진균제(Voriconazole 등)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인정 <p>라. 침습성 진균감염 예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Micafungin, Fluconazole, Itraconazole 시럽 투여시 인정 2)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관해-유도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Posaconazole 투여시 인정 <p>마. Liposomal amphotericin B와 Colloidal amphotericin B는 타 항진균제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인정</p> <p>바. 그 외의 진균감염증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례별로 인정함. 단, Liposomal amphotericin B를 만성육아종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1차 약제로 인정함.</p> <p>2.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도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형장기이식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(호중구 감소증,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)의 진균감염 예방에 Fluconazole, Itraconazole, Liposomal amphotericin B를 투여한 경우 <p>* 대상약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zole계: Fluconazole, Itraconazole, Posaconazole, Voriconazole - Echinocandin계: Anidulafungin, Caspofungin, Micafungin - Polyene계: Amphotericin B deoxycholate, Colloidal amphotericin B, Liposomal amphotericin B 	<p>할 수 있도록 하고, '호중구감소성 발열의 경험적 치료'에는 Caspofungin을 1차로 투여할 수 있도록 각각 급여기준을 확대함.</p>
--	--	---

- 2 -

[439]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(안)	사유
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(품명: 큐피스템주)	<p>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투여 대상: 가, 나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로 중증(CDAI 450 이상)의 활동성 크론병 환자는 제외함.</p> <p>1) 난치성(3개월 정도의 통상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) 또는 재발성 크론성 누공환자</p> <p>2) 누공 유형: 복잡형 치루이며 통상적인 수술로 팔약근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.</p> <p>나. 투여 용량: 배양된 약제 1회 사용량(total quantity basis)으로 인정</p> <p>다. 투여 횟수: 첫 번째 투여(first injection)에 한하여 인정</p> <p>라. 병용 투여: 누공치료에 동일 목적으로 사용시, infliximab 약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.</p>	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로 교파서, 가이드라인, 임상연구논문 등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중 중증의 활동성 크론병 환자를 제외한 난치성 또는 재발성 크론성 누공환자와 복잡형 치루에 급여 인정함.

※ 관련근거

- Harrison'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, 18e. Chapter 295. Inflammatory Bowel Disease
- Pharmacotherapy: A Pathophysiologic Approach, 8e. Chapter 41. Inflammatory Bowel Disease
- Feldman: Sleisenger and Fordtran'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, 9th ed. 2010
- Townsend: Sabiston Textbook of Surgery, 19th ed. 2012
- Goldman: Goldman's Cecil Medicine, 24th ed. 2011
- Bope and Kellerman: Conn's Current Therapy 2012, 1st ed.
- World Gastroenterology Organisation Global Guideline: inflammatory bowel disease: a global perspective. 2009 Jun.
- American Society of Colon and Rectal Surgeons: Practice parameters for the surgical management of Crohn's disease. Dis Colon Rectum,

- 3 -

November 2007

-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187: Infliximab (review) and adalimumab for the treatment of Crohn's disease. 2010 May.
- European evidence based consensus o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rohn's disease: definitions and diagnosis for the European Crohn's and Colitis Organisation (ECCO)
- Garcia-Olmo D et al. Expanded adipose-derived stem cells for the treatment of complex perianal fistula: a phase II clinical trial. Dis Colon Rectum. 2009 Jan;52(1):79-86.
- Yong Beom Cho, MD, PhD,¹ Woo Yong Lee, Autologous adipose tissue-derived stem cells for the treatment of Crohn's fistula: A Phase I clinical study 2012 Cognizant Communication Corporation
- Autologous adipose tissue-derived stem cells Treatment Demonstrated Favorable and Sustainable Therapeutic Effect for Crohn's Fistula. stem cells. 2013. Feb

- 4 -

<변경>

[일반원칙]

구분	현행	개정(안)	사유
고지혈증치료제	<p>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래 -</p> <p>1.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</p> <p>1)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: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/dl 이상일 때</p> <p>2)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: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/dl 이상일 때 *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된 경우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/dl 이상</p>	<p>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래 -</p> <p>가. 순수 고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(LDL-C)혈증</p> <p>1) 투여대상</p> <p>가) 위험요인*이 0~1개인 경우: 혈중 $LDL-C \geq 160 \text{ mg/dL}$ 일 때</p> <p>나) 위험요인*이 2개 이상인 경우: 혈중 $LDL-C \geq 130 \text{ mg/dL}$ 일 때</p> <p>다)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(말초동맥질환, 복부대동맥류,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, 당뇨병)인 경우: 혈중 $LDL-C \geq 100 \text{ mg/dL}$ 일 때</p> <p>라)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: 혈중</p>	<p>-국내·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여기준을 '총콜레스테롤'에서 '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(LDL-C)'로 변경하고, 위험도 분류 및 위험군별 약제 급여인정 LDL-C 수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 약제를 정비함.</p>

- 5 -

구분	현행	개정(안)	사유
	<p>3) 해당 약제 : HMG-CoA 환원효소억제제, 담즙산제거제,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인정</p> <p>2.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</p> <p>1)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: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TG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/dL 이상일 때</p> <p>2)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: TG검사에서 연속 2회 200mg/dL 이상일 때</p> <p>3) 해당 약제: Fibrate계열, Niacin계열 중 1종 인정</p> <p>3. 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인 경우</p> <p>1)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: 혈중 총 콜레스테롤 250mg/dl 이상이고, 혈중 TG 320mg/dL 이상일 때</p> <p>2)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: 혈중 총 콜레스테롤 220mg/dl 이상이고, 혈중 TG</p>	<p><u>$LDL-C \geq 70 \text{ mg/dL}$ 일 때</u></p> <p>2) 해당 약제: HMG-CoA 환원효소 억제제, 담즙산제거제, Fibrate 계열, <u>Niacin 계열, Ezetimibe</u> 중 1종</p> <p>나. 순수 고 트리글리세라이드(TG)혈증</p> <p>1) 투여대상</p> <p>가) 혈중 $TG \geq 500 \text{ mg/dL}$ 일 때</p> <p>나) 위험요인*이 있는 경우: 혈중 $TG \geq 200 \text{ mg/dL}$ 일 때</p> <p>2) 해당 약제: Fibrate 계열, Niacin 계열 중 1종</p> <p>다. 고 $LDL-C$ 및 고 TG혈증 복합형</p> <p>우선적으로 $LDL-C$를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TG가 “2. 순수 고 TG혈증”에 해당되면 Fibrate 계열 또는 Niacin 계열 중 1종 추가 인정</p>	<p>-국내·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TG 수치와 횟수를 변경함</p> <p>-LDL-C 저하 이후에도 TG가 높은 경우에는 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</p>

- 6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200mg/dl 이상일 때</p> <p>3) 해당 약제 : 콜레스테롤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</p> <p><신 설></p> <p>4. 동맥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(심근경색)</p>	<p>라.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(<i>therapeutic lifestyle changes</i>)를 병행하여 실시도록 권장함</p> <p>* 위험요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흡연 ② 고혈압($BP \geq 140/90 \text{ mmHg}$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)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(HDL-C)($<40 \text{ mg/dL}$)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(부모, 형제자매 중 남자$\geq 55\text{세}$, 여자$\geq 65\text{세}$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) ⑤ 연령(남자$\geq 45\text{세}$, 여자$\geq 55\text{세}$) <p>※ HDL-C$\geq 60 \text{ mg/dL}$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.</p> <p><삭 제></p>	<p>-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의거, 고지혈증치료제 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함.</p> <p>- NCEP ATPIII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고지혈증 위험요인을 명확히 함.</p>

- 7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증의 기왕력, 허혈성 심질환, 고혈압, 당뇨병이 있는 경우)이 있는 고지혈증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투약하되, 가능한 한 저용량(1일 1~2정 또는 1~2pack) 투여를 원칙으로 함.</p> <p>5.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(1일 1~2정 또는 1~2pack)을 투여토록 함.</p> <p>6. omega-3-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는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사용하는 약제로 개별 약제 고시 기준을 따름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

[일반원칙]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당뇨병용제	<p>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(제2형 당뇨병)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~ 바. 생략</p>	<p>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(제2형 당뇨병)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~ 바. 혈행과 같음</p>	<p>'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'에 신규 등재되는 '네시나정'의 성분명을 추가함.</p>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※ 대상약제</p> <p>[경구제 중 단일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Biguanide계: Metformin HCl • Sulfonylurea계: Glibenclamide, Glidazide, Glimepiride, Glipizide • Meglitinide계: Mitiglinide calcium hydrate, Nateglinide, Repaglinide • α-glucosidase inhibitor계: Acarbose, Miglitol Voglibose • Thiazolidinedione계: Pioglitazone HCl, Rosiglitazone maleate • DPP-IV inhibitor계: <신 설>, Gemigliptin, Linagliptin, Saxagliptin, Sitagliptin phosphate, Vildagliptin <p>[경구제 중 복합제]</p> <p>현행과 같음</p> <p>[주사제]</p> <p>현행과 같음</p>	<p>※ 대상약제</p> <p>[경구제 중 단일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Biguanide계: Metformin HCl • Sulfonylurea계: Glibenclamide, Glidazide, Glimepiride, Glipizide • Meglitinide계: Mitiglinide calcium hydrate, Nateglinide, Repaglinide • α-glucosidase inhibitor계: Acarbose, Miglitol Voglibose • Thiazolidinedione계: Pioglitazone HCl, Rosiglitazone maleate • DPP-IV inhibitor계: Alogliptin, Gemigliptin, Linagliptin, Saxagliptin, Sitagliptin phosphate, Vildagliptin <p>[경구제 중 복합제]</p> <p>현행과 같음</p> <p>[주사제]</p> <p>현행과 같음</p>	

- 9 -

[일반원칙]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향정신성약물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,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.</p> <p>2.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에서 치료기간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 아래의 약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>(1) Triazolam(품명: 할시온정 등) : 1회 처방 시 3주이내</p> <p>(2) Chloralhydrate(품명: 포크랄시럽) : 1회 처방시 2주 이내</p> <p>(3) Midazolam경구제(품명: 도미컴정 등) : 불면증의 경우 1회처방시 2주이내</p> <p>3. 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말기환자,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,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, 중증 정신질환자</p> <p>나. 선원, 장기출장,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</p> <p>3. 2항에도 불구하고,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>가. 말기환자,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,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, 중증 정신질환자</p>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,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.</p> <p>2.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말기환자,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,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, 중증 정신질환자</p> <p>나. 선원, 장기출장,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</p> <p>3. 2항에도 불구하고,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	<p>-향정신성약물 사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원칙 중 일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순서와 내용을 명확히 함.</p>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나. 선원, 장기출장,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</p> <p>4.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~12개월마다 혈액검사(간·신기능검사 포함) 및 환자상태를 추적·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.</p> <p>5. Benzodiazepine계열 등은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(withdrawal syndrome)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~16주에 걸쳐 1~2 주마다 10~25%를 감소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.</p> <p>※ 대상성분 : Alprazolam, Bromazepam, Brotizolam, Chlordiazepoxide, Clobazam, Clorazepate</p>	<p>- 아 래 -</p> <p>가. Triazolam(품명: 할시온정 등) : 1회 처방 시 3주이내</p> <p>나. Chloral hydrate(품명: 포크랄시럼) : 1회 처방 시 2주 이내</p> <p>다. Zolpidem 10mg(품명: 스텔녹스정 10밀리그램 등) : 1회 처방 시 4주 이내</p> <p>4. 현행과 같음.</p> <p>5. 현행과 같음</p> <p>※ 대상성분 : Alprazolam, Bromazepam, Brotizolam, Chlordiazepoxide, Clobazam, Clorazepate</p>	<p>-식약처의 Zolpidem 10mg의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원칙에 투여기간을 명시함.</p>

- 11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dipotassium, Clotiazepam, Diazepam, Ethyl loflazepate, Etizolam, Flurazepam, Lorazepam, Mexazolam, Midazolam, Pinazepam, Triazolam, Zolpidem.	Clotiazepam, Diazepam, Ethyl loflazepate, Etizolam, Flurazepam, Lorazepam, Mexazolam, Midazolam, Pinazepam, Triazolam, Zolpidem.	

[142] 자격요법제

현 행		개 정(안)		사유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
Golimumab 주사제 (품명: 실퍼니프리필드 시린지주50밀리 그램)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</p> <p>1) 투여대상 (다음 가), 나)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)</p>	Golimumab 주사제 (품명: 실퍼니프리필드 시린지주50밀리 그램 등)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</p> <p>1) 투여대상 ACR/EULAR 진단기준(2010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</p>	<p>-‘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’에 ‘심 페니오토인제터주50밀리그램이 등재됨에 따라 해당 품목명에 ‘등’을 추가함.</p> <p>-중증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기준을 최근 국제적</p>

현 행		개 정(안)		사유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
	<p>가) 미국류마티스학회(ACR) 표준진단기준(1987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</p> <p>(1) 적혈구침강속도(ESR)>28mm/hr 이거나 C반응단백질(CRP)>2.0 mg/dL</p> <p>(2)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</p> <p>(3) 활성 관절수가 적어도 20관절 이상이거나 다음 중 4개의 대관절을 포함한 6관절 이상인 경우</p> <p>(가) 팔꿈치, 손목, 무릎, 발목 :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</p> <p>(나) 어깨, 엉덩이: 수동적 관절운동(Passive movement)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</p>		<p>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 (MTX(Methotrexate) 포함)의 DMARDs로 6개월 이상(각 3개월 이상)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,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(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,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)</p> <p>- 다음 -</p> <p>가) DAS28이 5.1 초과</p> <p>나) DAS28이 3.2 ~ 5.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</p> <p>※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</p>	으로 통용되는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기준으로 변경하여 임상진료 현실을 반영함.

- 13 -

현 행		개 정(안)		사유
구 分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구 分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
	<p>나) 두 가지 종류 이상(MTX 포함)의 DMARDs(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)로 6개월 이상(각 3개월 이상)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,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: 다만 MTX(Methotrexate) 사용이 불가능한,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 (Methotrexate)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</p> <p>2) 평가방법</p> <p>가)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(4회 투여)후 평가시 적혈구침강속도(ESR)>28mm/hr 이거나 C반응단백질(CRP) 2.0mg/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수치(ESR 또는 CRP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DAS28(ESR) = $0.56 \times \sqrt{(TJC_{28})} + 0.28 \times \sqrt{(SJC_{28})} + 0.014 \times VAS + 0.70 \times \ln(ESR)$ ◦ DAS28(CRP) = $0.56 \times \sqrt{(TJC_{28})} + 0.28 \times \sqrt{(SJC_{28})} + 0.014 \times VAS + 0.36 \times \ln(CRP+1) + 0.96$ <p>TJC: 암통 관절수 SJC: 부종 관절수 VAS: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</p> <p>2) 평가방법</p> <p>가)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(7회 투여) 후 평가시 DAS28이 1.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(6회 투여)을 인정함.</p>	

- 14 -

현 행		개 정(안)		사유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
	<p>20%이상 감소한 경우로서</p> <p>나) 활성관절 수(압통 및 부종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%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(6회 투여)을 인정함.</p> <p>다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(6회 투여 후)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나~다. 생략</p> <p>2~6. 생략</p>		<p>나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(6회 투여 후)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나~다. 현행과 같음</p> <p>2~6. 현행과 같음</p>	

[142] 자격요법제

구 分	현 행	개 정(안)	사유
Tocilizumab 주사제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	-중증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기준을

- 15 -

구 分	현 행	개 정(안)	사유
(품명: 악템라주)	<p>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투여대상</p> <p>다음 1), 2)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</p> <p>1) 미국류마티스학회(ACR) 표준진단기준 (1987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</p> <p>가) 적혈구 침강속도(ESR)>28mm/hr 이거나 나) C반응단백(CRP)>2.0mg/dL</p> <p>나)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</p> <p>다) 활성관절 수가 적어도 20 관절 이상이거나 다음 중 4개의 대관절을 포함한 6관절 이상인 경우</p> <p>- 다 음 -</p> <p>(1) 팔꿈치, 손목, 무릎, 발목: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</p> <p>(2) 어깨, 엉덩이: 수동적 관절운동(Passive movement)의 제한 및 통증</p>	<p>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투여대상</p> <p><u>ACR/EULAR 진단기준(2010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(MTX(Methotrexate) 포함)의 DMARDs(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)로 6개월 이상(각 3개월 이상)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,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(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,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)</u></p> <p>- 다 음 -</p> <p>가) DAS28이 5.1 초과</p> <p>나) DAS28이 3.2 ~ 5.1이고 영상 검사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</p>	<p>최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기준으로 변경하여 임상진료현실을 반영함.</p>

- 16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으로 평가</p> <p>2) 두 가지 종류 이상(MTX(Methotrexate) 포함)의 DMARDs(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)로 6개월 이상(각 3개월 이상)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,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: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,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</p> <p>나. 평가방법</p> <p>1)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적혈구침강속도(ESR) 28mm/hr 이하이거나 C반응단백(CRP) 2.0mg/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검사(ESR 또는 CRP) 수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20%이상 감소한 경우로서</p> <p>2) 활성관절 수(압통 및 부종)가 최초 투여 시점 보다 50%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	<p>joints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DAS28(ESR) = $0.56 \times \sqrt{(TJC 28)} + 0.28 \times \sqrt{(SJC 28)} + 0.014 \times VAS + 0.70 \times \ln(\text{ESR})$ DAS28(CRP) = $0.56 \times \sqrt{(TJC 28)} + 0.28 \times \sqrt{(SJC 28)} + 0.014 \times VAS + 0.36 \times \ln(CRP+1) + 0.96$ <p>TJC: 압통 관절수 SJC: 부종 관절수 VAS: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</p> <p>나. 평가방법</p> <p>1)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.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	

- 17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3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 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다. 생략</p>	<p>2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 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다. 현행과 같음</p>	

[219] 기타의 순환계용약

현 행		개 정(안)		사유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
Alteplase (품명: 액티라제주)	<p>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폐색전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생략</p> <p>나. 급성 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생략</p> <p>다. 급성 허혈성뇌졸중에 증상 발현 후 3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</p>	Alteplase 주사제 (품명: 액티라제주)	<p>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현행과 같음</p> <p>나. 현행과 같음</p> <p>다. 급성 허혈성뇌졸중에 증상 발현 후 4.5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</p>	<p>식약처 허가사항 및 관련 학회의견,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급성 허혈성뇌졸중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증상 발현 후 45시간 까지 동 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함.</p>

- 18 -

현 행		개 정(안)		사유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
	0.9mg/kg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.		여 0.9mg/kg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.	

※ 관련근거

- Textbook of Critical Care, Sixth Edition. 2011 by Saunders, an imprint of Elsevier Inc. Chapter 34 Management of Acute Ischemic Stroke
- Emergency Medicine: Clinical Essentials, Second Edition. 2013 by Saunders, an imprint of Elsevier Inc. CHAPTER 100 Transient Ischemic Attack and Acute Ischemic Stroke
- Goldman's Cecil Medicine, Twenty-Fourth Edition. 2012 by Saunders, an imprint of Elsevier Inc. CHAPTER 414 Ischemic Cerebrovascular Disease
- Braunwald's Heart Disease: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, Ninth Edition. 2012 by Saunders, an imprint of Elsevier Inc. Chapter 62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troke
- 뇌졸중 진료지침 개정판(2013), 뇌졸중 임상연구 센터
- Minematsu K, et al. Guidelines for the Intravenous Application of Recombinant Tissue-type Plasminogen Activator (Alteplase), the Second Edition, October 2012: A Guideline From the Japan Stroke Society. J Stroke Cerebrovasc Dis. 2013 Jul;22(5):571-600.
-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275. Alteplase for treating acute ischaemic stroke (review of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122). Issued: September 2012
- Acute medical and surgical management. In: Clinical guidelines for stroke management 2010. Melbourne (Australia): National Stroke Foundation; 2010 Sep. p. 58-67.
- Executive Summary: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, 9th ed: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-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. Chest 2012;141:7S-47S
- AHA/ASA Science Advisory: Expansion of the time window for treatment of acute ischemic stroke with intravenous tissue plasminogen activator: a science advisory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/American Stroke Association. Stroke. 2009 Aug;40(8):2945-8.

- 19 -

- ESO Guideline Update - January 2009: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Ischaemic Stroke and Transient Ischaemic Attack 2008. Cerebrovasc Dis 2008;25:457-507
- LiBH, et al. Meta-analysis of clinical outcomes of intravenous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for acute ischemic stroke: within 3 hours versus 3-4.5 hours. Curr Med Res Opin. 2013 Sep;29(9):1105-14.
- Maisier SJ, et al. Intravenous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administered after 3 h following onset of ischaemic stroke: a metaanalysis. Int J Stroke. 2011 Feb;6(1):25-32.
- Carpenter CR, et al. Thrombolytic therapy for acute ischemic stroke beyond three hours. J Emerg Med. 2011 Jan;40(1):82-92.
- Ahmed N, et al. Implementation and outcome of thrombolysis with alteplase 3-4.5 h after an acute stroke: an updated analysis from SITS-ISTR. Lancet Neurol. 2010 Sep;9(9):866-74.
- Lees KR, et al. Time to treatment with intravenous alteplase and outcome in stroke: an updated pooled analysis of ECASS, ATLANTIS, NINDS, and EPITHET trials. Lancet. 2010 May 15;375(9727):1695-703.
- Wardlaw JM, et al. Thrombolysis for acute ischaemic stroke. Cochrane Database Syst Rev. 2009 Oct 7;(4):CD000213.
- Lansberg MG, et al. Efficacy and safety of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3 to 4.5 hours after acute ischemic stroke: a metaanalysis. Stroke. 2009 Jul;40(7):2438-41.
- Hacke W, et al. Thrombolysis with alteplase 3 to 4.5 hours after acute ischemic stroke. N Engl J Med. 2008 Sep 25;359(13):1317-29.
- SMC: alteplase (Actilyse) Date Advice Published: 11 June 2012
- Aetna: Clinical Policy Bulletin: Acute Ischemic Stroke: Treatments(Number 0789: last review 12/12/2012)

[222] 진해거담제

구 分	현 행	개 정(안)	사유
Beclomethasone dipropionate +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지속성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	국제가이드라인('11 GINA)을 반영하여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Formoterol (품명:포스터 100/6 에이치에프에이)	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.	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<u>단, 3~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</u> <u>가 결과를 기재토록 함.</u>	흡입용 천식치료제 급여기준을 현행 '중 등도 지속성 이상' 단 계에서 '부분조절 이 상'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.

※ 관련근거

- Mason: Murray and Nadel's Textbook of Respiratory Medicine, 5th ed.
- GINA(Global Strategy for Asthma management and prevention 2011)
-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, COPD 천식의 진료지침 (2012)
- Nathan RA, D'Urzo A, Blazhko V, Safety and efficacy of fluticasone/formoterol combination therapy in adolescent and adult patients with mild-to-moderate asthma :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. BMC Pulm Med. 2012 Oct 18;12:67.
- Korn S, Both J, Jung M, Prospective evaluation of current asthma control using ACQ and ACT compared with GINA criteria. Ann Allergy Immunol. 2011 Dec;107(6):474-9.

[222] 진해거담제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Formoterol fumarate + (micronized)budeso	각 약제의 규격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	각 약제의 규격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 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	국제가이드라인('11 GINA)을 반영하여 흡입용 천식치료제

- 21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nide흡입제 (품명:심비코트더 부헬러)	록 함. - 아 래 - 가.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 나.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(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% 미만)에 투여 시 인정	부담토록 함. - 아 래 - 가. <u>부분조절 이상 단계</u> 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 <u>단, 3~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</u> <u>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.</u> 나. 현행과 같음	급여기준을 현행 '중 등도 지속성 이상' 단 계에서 '부분조절 이 상'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.

※ 관련근거

- Mason: Murray and Nadel's Textbook of Respiratory Medicine, 5th ed.
- GINA(Global Strategy for Asthma management and prevention 2011)
-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, COPD 천식의 진료지침 (2012)
- Nathan RA, D'Urzo A, Blazhko V, Safety and efficacy of fluticasone/formoterol combination therapy in adolescent and adult patients with mild-to-moderate asthma :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. BMC Pulm Med. 2012 Oct 18;12:67.
- Korn S, Both J, Jung M, Prospective evaluation of current asthma control using ACQ and ACT compared with GINA criteria. Ann Allergy Immunol. 2011 Dec;107(6):474-9.

[222] 진해거담제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Salmeterol xinafoate +	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 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	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 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	국제가이드라인('11 GINA)을 반영하여

- 22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(품명: 세레타이드 디스커스, 세레타이드에보할러)	<p>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도록 함. - 아 래 -</p> <p>가.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</p> <p>나.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(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% 미만)</p>	<p>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도록 함. - 아 래 -</p> <p>가. <u>부분조절 이상 단계</u>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 단, 3~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도록 함.</p> <p>나. <u>중등도 이상</u>의 만성폐쇄성폐질환(<u>기관지 확장제 투여후</u>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% 미만)</p>	<p>흡입용 천식치료제 급여기준을 현행 '중등도 지속성 이상' 단계에서 '부분조절 이상'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.</p> <p>-국제가이드라인('11 GINA) 및 국내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기준을 "중증" => "중등도"로 변경하고, FEV1 예상 정상치는 60% 미만으로 조정함.</p>

* 관련근거

- Harrison's Online Part 11 Chapter 260.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
- Mason: Murray and Nadel's Textbook of Respiratory Medicine, 5th ed.
- GOLD(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-Global strategy for the diagnosis management, and prevention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(2011).
-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: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: Management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adults in primary and secondary care

- 23 -

-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, COPD 천식의 진료지침 (2012)
- GINA(Global Strategy for Asthma management and prevention 2011)
- The effect of inhaled salmeterol,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fluticasone propionate, on management of COPD patients. Mansori F, Nemat Khorasani A, Clin Respir J. 2010 Oct;4(4):241-7
- Comparison of tiotropium plus fluticasone propionate/salmeterol with tiotropium in COPD: A randomised controlled study. Ki Suck Jung a, Hye Yun Park b. Respiratory Medicine(2011)
- The Efficacy and Safety of Fluticasone Propionate(250 g)/Salmeterol (50 g) Combined in the Diskus Inhaler for the Treatment of COPD. Nicola A. Hanania, MD, FCCP; Patrick Darken, CHEST 2003; 124:834-843
- Efficacy of salmeterol/fluticasone propionate by GOLD stage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: analysis from the randomised, placebo-controlled TORCH study. Jenkins CR, Jones PW, Respir Res. 2009 Jun 30;10:59

[232] 소화성 궤양용제

구 分	현 행	개 정(안)	사유
Lafutidine 경구제 (품명: 스토가정 10mg 등)	<p>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궤양, 십이지장 궤양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의 개선 <i>Helicobacter pylori</i>에 감염된 소화성 궤양 환자에 대한 항생제 병용요법 마취전 투약 <p><신 설></p>	<p>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아 래 -</p> <p>가. 현행과 같음 나. 현행과 같음 다. 현행과 같음 라. 현행과 같음 마. 역류성 식도염 치료</p>	<p>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(2013.08), 임상논문 및 교과서를 근거로 허가 추가된 적용증 (역류성 식도염)에 대하여 급여를 인정함</p>

- 24 -

※ 관련근거

-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
- Shuichi Ohara et al., A double-blind, controlled study comparing lafutidine with placebo and famotidine in Japanese patients with mild reflux esophagitis. J Gastroenterol (2010) 12:1219-1227.
- 大原秀一 등., 경증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플라세보 및 파모티딘(Famotidine)을 대조로 한 라푸티딘(Lafutidine)의 유효성 검토 - 실시 담당 의사와 내시경 판정 위원회의 사진 판정 비교 검토를 포함함. 일본소화기 병학회 잡지 2010;107:588-597
- Hatsushi Yamagishi et al., Stronger inhibition of gastric acid secretion by lafutidine, a novel H₂ receptor antagonist, than by the proton pump inhibitor lansoprazole. World J Gastroenterol. 2008 April 21; 14(15): 2406 - 2410.

[421] 항악성종양제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Rituximab (품명: 맵테라주)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도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림프종,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생략</p> <p>나. 류마티스 관절염</p> <p>1) 투여대상</p> <p>미국류마티스학회(ACR) 표준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</p>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도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림프종,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현행과 같음</p> <p>나. 류마티스 관절염</p> <p>1) 투여대상</p> <p>ACR/EULAR 진단기준(2010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</p>	<p>-중증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기준을 최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AS28 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 기준으로 변경하여 임상진료현실을 반영 함.</p>

- 25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길항제(TNF-α inhibitor)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</p> <p>※ TNF-α inhibitor요법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란 다음 조건(TNF-α inhibitor 요법의 계속투여 조건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함</p> <p>- 다 음 -</p> <p>가) TNF-α inhibitor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적혈구침강속도(ESR) 28mm/hr 이하이거나 C반응성단백질(CRP) 2.0mg/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검사(ESR 또는 CRP) 수치가 최초 투여시 점 보다 20%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활성 관절 수(압통 및 부종)가 최초 투여시 점 보다 50% 이상 감소된 경우</p> <p>나) TNF-α inhibitor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에서 계속 투여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</p>	<p>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(TNF-α inhibitor)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</p> <p>※ TNF-α inhibitor요법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</p> <p>- 다 음 -</p> <p>가) TNF-α inhibitor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.2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</p> <p>나) TNF-α inhibitor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에서 계속 투여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여 후 6개월마</p>	

- 26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첫 <u>3개월째</u>의 평가결과가 <u>유지되는 경우</u></p> <p>2) 재투여 요건</p> <p>직전코스 투여 16주 후 반응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 이후 직전코스 평가결과보다 20% 이상 악화된 경우단, 활성관절 수는 3개 이상이어야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) 적혈구침강속도(ESR) 28mm/hr 이하이거나 C반응성단백질(CRP) 2.0mg/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검사(ESR 또는 CRP) 수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20%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</p> <p>나) 활성관절 수(압통 및 부종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20% 이상 감소된 경우</p> <p>* 코스 간 투여간격은 최소 6개월은 경과하여야 함.</p> <p>다) 1코스: 1회 1,000mg씩 2주 간격 2회</p> <p>3) 생략</p> <p>다. 생략</p>	<p>다 평가를 하여 첫 <u>6개월째</u>의 평가결과가 <u>유지되지 않는 경우</u></p> <p>2) 재투여 요건</p> <p>직전코스 투여 16주 후 반응평가에서 DAS28이 1.2 이상 감소하는 반응을 보인 이후, 직전 코스 투여 후 최소 6개월 경과 재투여시 직전 코스 평가 DAS28 보다 0.6 이상 악화된 경우</p> <p>※ <삭제></p> <p>※ 1코스: 1회 1,000mg씩 2주 간격 2회</p> <p>3) 현행과 같음</p> <p>다. 현행과 같음</p>	

- 27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2~3. 생략	2~3. 현행과 같음	

[439]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Abatacept 주사제 (품명: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,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)	<p>1.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(허가사항에 따라 '소아특발성 관절염'은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만 해당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투여대상</p> <p>다음 1), 2)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1) <u>미국류마티스학회(ACR) 표준진단기준(1987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및 소아(6-17세)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</u></p> <p>가) 성인: <u>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</u></p>	<p>1.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(허가사항에 따라 '소아특발성 관절염'은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만 해당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투여대상</p> <p>다음 1), 2)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1)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</p> <p>가) 성인: <u>ACR/EULAR 진단기준(2010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</u></p>	<p>중증 성인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기준을 최근 국제적으로 통용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는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기준으로 변경하여 임상진료현실을 반영함.</p>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<u>시에 충족하는 경우</u></p> <p>(1) 적혈구침강속도(ESR)>28mm/hr 이거나 나 C반응단백(CRP)>2.0mg/dL</p> <p>(2)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</p> <p>(3) 활성관절 수가 적어도 20 관절 이상이나 다음 중 4개의 대관절을 포함한 6관절 이상인 경우</p> <p>(가) 팔꿈치, 손목, 무릎, 발목: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</p> <p>(나) 어깨, 엉덩이: 수동적 관절운동(Passive movement)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</p> <p>나) 소아: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의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아래의 (1), (2)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</p>	<p><u>염 환자로서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- 다음 -</p> <p>(1) DAS28이 5.1 초과</p> <p>(2) DAS28이 3.2 ~ 5.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</p> <p>*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DAS28(ESR) = $0.56 \times \sqrt{(TJC_28)} + 0.28 \times \sqrt{(SJC_28)} + 0.014 \times VAS + 0.70 \times \ln(ESR)$ ◦ DAS28(CRP) = $0.56 \times \sqrt{(TJC_28)} + 0.28 \times \sqrt{(SJC_28)} + 0.014 \times VAS + 0.36 \times \ln(CRP+1) + 0.96$ <p>TJC: 압통 관절수 SJC: 부종 관절수 VAS: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</p> <p>나) 소아(6-17세): 현행과 같음</p>	

- 29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(1) 5개 이상의 부종 관절</p> <p>(2) 3개 이상의, 압통 또는 운동제한 관절</p> <p>2) 두 가지 종류 이상(MTX(Methotrexate) 포함)의 DMARDs(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)로 6개월 이상(각 3개월 이상)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,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: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,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</p> <p>나. 평가방법</p> <p>1) 성인</p> <p>가)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적혈구침강속도(ESR) 28mm/hr 이하이나 C반응단백(CRP) 2.0mg/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검사(ESR 또는 CRP) 수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20%이상 감소한 경우로서</p> <p>나) 활성관절 수(압통 및 부종)가 최초 투</p>	<p>(1) 현행과 같음</p> <p>(2) 현행과 같음</p> <p>2) 현행과 같음</p> <p>나. 평가방법</p> <p>1) 성인</p> <p>가)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.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	

- 30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여시점 보다 50%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 <p>다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2) 소아</p> <p>가)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 수(부종관절 등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%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 <p>나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다. 생략</p> <p>2~4. 생략</p>	<p>나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2) 소아(6-17세)</p> <p>가) 현행과 같음</p> <p>나) 현행과 같음</p> <p>다. 현행과 같음</p> <p>2~4. 현행과 같음</p>	

[439]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Adalimumab	1.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	1.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	증증 성인 류마티스관

- 31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주사제 (품명: 휴미라주)	<p>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래 -</p> <p>가.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, 다른 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</p> <p>1) 투여대상</p> <p>다음 가), 나)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</p> <p>가) 미국류마티스학회(ACR) 표준진단기준(1987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및 소아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</p> <p>(1) 성인: 증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</p> <p>(가) 적혈구침강속도(ESR)>28mm/hr 이거나 C반응단백질(CRP)>2.0mg/dL</p> <p>(나)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</p> <p>(다) 활성관절 수가 적어도 20 관절 이상이거나 다음 중 4개의 대관절을 포함한 6관절 이상인 경우</p> <p>① 팔꿈치, 손목, 무릎, 발목: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</p>	<p>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래 -</p> <p>가.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, 다른 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</p> <p>1) 투여대상</p> <p>다음 가), 나)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</p> <p><u>가)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</u></p> <p>(1) 성인: <u>ACR/EULAR 진단기준(2010년 제정)</u>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음 -</p> <p><u>(가) DAS28이 5.1 초과</u></p> <p><u>(나) DAS28이 3.2 ~ 5.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</u></p> <p>*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</p>	<p>질염의 진단기준을 최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기준으로 변경하여 임상진료현실을 반영함.</p>

- 32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② 어깨, 엉덩이: 수동적 관절운동(Passive movement)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</p> <p>(2) 소아: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의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(4-17세)로서 아래의 (가), (나)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</p> <p>(가) 5개 이상의 부종 관절</p> <p>(나) 3개 이상의, 압통 또는 운동제한 관절</p> <p>나) 두 가지 종류 이상(MTX(Methotrexate) 포함)의 DMARDs(Disease Modifying Anti-Rheumatic Drugs)로 6개월 이상(각 3개월 이상)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,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DAS28(ESR) = $0.56 \times \sqrt{(TJC \ 28)} + 0.28 \times \sqrt{(SJC \ 28)} + 0.014 \times VAS + 0.70 \times \ln(ESR)$ DAS28(CRP) = $0.56 \times \sqrt{(TJC \ 28)} + 0.28 \times \sqrt{(SJC \ 28)} + 0.014 \times VAS + 0.36 \times \ln(CRP+1) + 0.96$ <p>TJC: 압통 관절수 SJC: 부종 관절수 VAS: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</p> <p>(2) 소아(4-17세):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의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아래의 (가), (나)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</p> <p>(가) 현행과 같음</p> <p>(나) 현행과 같음</p> <p>나) 현행과 같음</p>	

- 33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: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,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</p> <p>2) 평가방법</p> <p>가) 성인</p> <p>(1)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ESR 28mm/hr 이하이거나 CRP 2.0mg/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수치(ESR 또는 CRP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20%이상 감소한 경우로서</p> <p>(2) 활성관절 수(압통 및 부종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%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 <p>(3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 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나) 소아</p> <p>(1)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활성 관절수(부종관절 등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%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	<p>2) 평가방법</p> <p>가) 성인</p> <p>(1)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.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 <p>(2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2) 소아(4-17세)</p> <p>(1) 현행과 같음</p>	

- 34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(2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급여를 인정함.</p> <p>나~바. 생략 2~7. 생략</p>	<p>(2) 현행과 같음 나~바. 현행과 같음 2~7. 현행과 같음</p>	

[439]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

구 分	현 행	개 정(안)	사유
Etanercept 주사제 (품명: 엔브렐주사)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, 소아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</p> <p>1) 투여대상 다음 가), 나)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) <u>미국류마티스학회(ACR) 표준진단기준</u> <u>(1987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및 소아의</u></p>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, 소아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</p> <p>1) 투여대상 다음 가), 나)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) <u>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</u></p>	<p>종종 성인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기준을 최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기준으로 변경하여 임상진료현실을 반영함.</p>

- 35 -

구 分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<u>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</u></p> <p>(1) 성인: <u>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</u></p> <p>(가) 적혈구침강속도(ESR)>28mm/hr 이거나 C반응단백(CRP)>2.0mg/dL</p> <p>(나)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</p> <p>(다) 활성관절 수가 적어도 20 관절 이상이거나 다음 중 4개의 대관절을 포함한 6관절 이상인 경우</p> <p>① 팔꿈치, 손목, 무릎, 발목: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</p> <p>② 어깨, 엉덩이: 수동적 관절운동(Passive movement)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</p>	<p>(1) 성인: <u>ACR/EULAR 진단기준(2010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- 다 음 -</p> <p>(가) <u>DAS28이 5.1 초과</u></p> <p>(나) <u>DAS28이 3.2 ~ 5.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</u></p> <p>*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<u>DAS28(ESR) = 0.56×√(TJC 28) + 0.28×√(SJC 28) + 0.014×VAS + 0.70×ln(ESR)</u> ◦ <u>DAS28(CRP) = 0.56×√(TJC 28) + 0.28×√(SJC 28) + 0.014×VAS + 0.36×ln(CRP+1) + 0.96</u> <p>TJC: 압통 관절수 SJC: 부종 관절수 VAS: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</p>	

- 36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(2) <u>소아</u>: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의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(4-17세)로서 아래의 (가), (나)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</p> <p>(가) 5개 이상의 부종 관절</p> <p>(나) 3개 이상의, 압통 또는 운동제한 관절</p> <p>나) 두 가지 종류 이상(MTX 포함)의 DMARDs (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)로 6개월 이상(각 3개월 이상) 치료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,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: 다만 MTX(Methotrexate) 사용이 불가능한,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</p> <p>2) 평가방법</p> <p>가) 성인</p> <p>(1)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ESR 28mm/hr 이하이거나 CRP 2.0mg/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검사(ESR 또는 CRP) 수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20%이상 감소한 경우로서</p>	<p>(2) <u>소아(4-17세)</u>: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의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아래의 (가), (나)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</p> <p>(가) 현행과 같음</p> <p>(나) 현행과 같음</p> <p>나) 현행과 같음</p> <p>2) 평가방법</p> <p>가) 성인</p> <p>(1) <u>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DAS28이 1.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 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u></p>	

- 37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(2) 활성관절 수(압통 및 부종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%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 <p>(3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나) <u>소아</u></p> <p>(1)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(부종관절 등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%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 <p>(2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급여를 인정함.</p> <p>나~라. 생략</p> <p>2~6. 생략</p>	<p>(2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<u>6개월째</u>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나) <u>소아(4-17세)</u></p> <p>(1) 현행과 같음</p> <p>(2) 현행과 같음</p> <p>나~라. 현행과 같음</p> <p>2~6. 현행과 같음</p>	

- 38 -

[439]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Infliximab 제제 (품명: 레미케이드 주 등)	<p>1.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크론병(허가사항에 따라 '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'은 레미케이드주만 해당) 생략</p> <p>나.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생략</p> <p>다.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) 투여대상 다음 가), 나)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) 미국류마티스학회(ACR) 표준진단기준 (1987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(1) 적혈구침강속도(ESR)>28mm/hr 이거나 C</p>	<p>1.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크론병(허가사항에 따라 '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'은 레미케이드주만 해당) 현행과 같음</p> <p>나.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현행과 같음</p> <p>다.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) 투여대상 <u>ACR/EULAR 진단기준(2010년 제정)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(MTX(Methotrexate) 포함)의 DMARDs(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)로 6개월 이상(각 3 개월 이상)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</u></p>	<p>증증 성인 류마티스관 절염의 진단기준을 최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기준으로 변경 하여 임상진료현실을 반영함.</p>

- 39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반응단백질(CRP)>2.0mg /dL (2)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(3) 활성관절 수가 적어도 20 관절 이상이거나 다음 중 4개의 대관절을 포함한 6관절 이상 인 경우 (가) 팔꿈치, 손목, 무릎, 빨목: 압통 및 부종 으로 평가 (나) 어깨, 엉덩이: 수동적 관절운동(passive movement)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 나) 두 가지 종류 이상(MTX(Methotrexate) 포함)의 DMARDs로 6개월 이상(각 3개월 이상)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,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 한 환자 :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,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</p>	<p>흡하거나,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(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,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 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 상의 DMARDs 사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) DAS28이 5.1 초과 나) DAS28이 3.2 ~ 5.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</p> <p>* DAS28(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DAS28(ESR) = $0.56 \times \sqrt{(TJC\ 28)} + 0.28 \times \sqrt{(SJC\ 28)} + 0.014 \times VAS + 0.70 \times \ln(ESR)$ ◦ DAS28(CRP) = $0.56 \times \sqrt{(TJC\ 28)} + 0.28 \times \sqrt{(SJC\ 28)} + 0.014 \times VAS + 0.36 \times \ln(CRP+1) + 0.96$ <p>TJC: 압통 관절수 SJC: 부종 관절수 VAS: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</p>	

- 40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2) 평가방법</p> <p>가)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ESR <u>28mm/hr</u> 이하이거나 CRP <u>2.0mg/dl</u> 이하인 경우 또는 동 수치(ESR 또는 CRP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20%이상 감소한 경우로서</p> <p>나) 활성관절 수(입통 및 부종)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%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p> <p>다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라~바. 생략</p> <p>2~5. 생략</p>	<p>2) 평가방법</p> <p>가) 동 약제를 <u>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.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.</u></p> <p>나)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.</p> <p>라~바. 현행과 같음</p> <p>2~5. 현행과 같음</p>	

[639]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Eculizumab 주사제 (품명: 솔리리스주)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도록 함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도록 함	

- 41 -

구 分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- 아 래-</p> <p>가. 투여대상 생략</p> <p>나. 제외 대상</p> <p>1) 과립구 클론(Granulocyte clone) 크기가 10% 미만인 환자</p> <p>2) 재생불량성 빈혈에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</p> <p>가) 호중구수 $0.5 \times 10^9/L$ 미만</p> <p>나) 혈소판수 $20 \times 10^9/L$ 미만</p> <p>다) 망상적혈구(Reticulocyte) $25 \times 10^9/L$ 미만</p> <p>라) 중증의 골수 저세포성(Bone marrow hypcellularity)</p> <p>3)~4) 생략</p> <p>다. 치료 효과 평가</p> <p>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함</p> <p>1) 모니터링 자료 생략</p> <p>2) 투여 유지 기준</p> <p>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 할 수 있음</p>	<p>- 아 래-</p> <p>가. 투여대상 현행과 같음</p> <p>나. 제외 대상</p> <p>1) 현행과 같음</p> <p>2) 현행과 같음</p> <p>가) 현행과 같음</p> <p>나) 현행과 같음</p> <p>다) 망상적혈구(Reticulocyte) $25 \times 10^9/L$ 미만</p> <p>라) 현행과 같음</p> <p>3)~4) 현행과 같음</p> <p>다. 치료 효과 평가</p> <p>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함</p> <p>1) 모니터링 자료 현행과 같음</p> <p>2) 투여 유지 기준</p> <p>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 할 수 있음</p>	- 수치 오류건 정정함.

- 42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<p>- 다 음 -</p> <p>가) 환자 또는 의료진이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</p> <p>나) 환자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(PNH) 관련 증상이나 합병증이 치료 후 임상적으로 호전되거나 안정화되지 못했을 경우</p> <p><신 설></p>	<p>- 다 음 -</p> <p>가)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, 12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</p> <p>나) 환자의 투여 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솔리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(단,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 야 함)</p> <p>다) 솔리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.5배 이하로 2회 연속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H 수치가 정상 수치의 1.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.5배 이상으로 6회 연속 상승하는 경우(LDH 검사 주기는 2~4주로 함)</p> <p>라) 솔리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</p> <p>마) 솔리리스주 투여에도 새로운 혈전이 발생한 경우 (단, 1년 이내에 발생한 혈전에 대해</p>	<p>-대한혈액학회 및 사전 심의위원회 자문을 참고하여 매6개월마다 제출하는 모니터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투여유지 여부 판단의 객관성과 특명성을 높임.</p>

- 43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	<p>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)</p> <p>바) 6개월 및 12개월 모니터링 시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중구수 $0.5 \times 10^9/L$ 미만 - 혈소판수 $20 \times 10^9/L$ 미만 - 망상적혈구(reticulocyte) $25 \times 10^9/L$ 미만 <p>사)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을 시행하여 PNH관련 증상이 호전된 경우</p> <p>아) 12개월 모니터링 시 과립구 크기가 10% 미만이며 LDH가 정상 상한치 이하인 경우 (솔리리스주 투여를 6개월 중단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)</p> <p>자) 기타 위원회에서 투여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* 동종조혈모세포이식(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)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 치료 방법인 이</p>	

- 44 -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사유
	라~마. 생략	식을 고려하여야 함. 라~마. 현행과 같음	

- 45 -

<삭 제>

[218] 동맥경화용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Ezetimibe 경구제 (품명: 이지트롤정 등)	<p>1. 허가사항 및 [일반원칙] 고지혈증 치료제 “세부사항” 범위 내에서 인정함.</p> <p>2.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-</p> <p>가. HMG-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</p> <p>나. 현재, HMG-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이하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으나,</p> <p> 1)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최대량으로의 증량이 어려운 경우</p> <p> 2) HMG-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용량 감량을 한 경우</p> <p>다.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</p>	[일반원칙] 고지혈증치료제에 포함시키고, 개별 고시사항을 삭제함.

[616] 주로 곰팡이, 원충에 작용하는 것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Colloidal amphotericin B 50mg, 100mg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

- 46 -

(품명: 콜로이드성 앰포실 주사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투여로 다음과 같이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(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)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.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상기에 해당하는 항진균제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(예: 폐렴악화, 발열지속) 2) 누적용량(Amphotericin B deoxycholate (품명: 훈기존주)) 500mg 이상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<p>나.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투여 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(혈청크레아티닌(SCr)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하였거나 약제투여 전 혈청크레아티닌(SCr) 수치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) 2) 항진균제 투여 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(SCr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한 경우) 3) 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. 	사항을 삭제함.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

[616] 주로 곰팡이, 원충에 작용하는 것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Liposomal	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

- 47 -

amphotericin B 주사제 (품명: 암비솜주사)	<p>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투여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,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침습성진균감염증이 확인된 경우는 확진(Proven) 또는 거의 틀림없는(Probable)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, 경험적으로 투여 시는 가능성성이 있는(Possible) 경우에도 인정함 2) 내장 레이슈마니아증은 허가된 용법·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 <p>나. 혈액종양환자나 풀수이식(BMT)환자의 「호중구 감소증의 발열」 인 경우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 치료에 실패하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투여기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) 원인을 알 수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나) 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후 5-7일 이내로 인정함. 2)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) 상기에 해당하는 항진균제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(예: 폐렴악화, 발열지속) 나) 누적용량[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 주)] 500mg이상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3)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) 상기 항진균제 투여 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(혈청크레아티닌(SCr)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하였거나, 약제투여 전 SCr 수치(기저수치)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) 나) 항진균제 투여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 (SCr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한 경 	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 사항을 삭제함.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48 -

	<p>우)</p> <p>다) 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.</p> <p>2. 선천성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>3.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○ 고형장기이식(Solid organ transplantation)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(호중구감소증,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)의 진균감염 예방 ※ 장기이식 수술 후 금식기간 동안에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.</p>	
--	---	--

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Anidulafungin 주사제 (품명: 에락시스주 100밀리그램)	<p>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○ 다음 상병으로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치료에 다음과 같이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사항을 삭제함.

- 49 -

	<p>가. 상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칸디다혈증 2)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 3)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복강내 농양 <p>나.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(예: 폐렴악화, 발열지속) 2) 누적용량[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] 500mg 이상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<p>다.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투여 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[혈청크레아티닌(SCr)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하였거나 기저 혈청크레아티닌(SCr) 수치(약제투여 전 수치)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] 2) 항진균제 투여 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[혈청크레아티닌(SCr)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한 경우] 3) 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. 	
--	---	--

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Caspofungin acetate 주사제 (품명 : 칸시다스주)	<p>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투여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. 2) 혈액종양환자나 풀수이식(BMT)환자의 「호중구 감소증의 발열」인 경우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. <p>○ 투여기간</p> <p>가) 원인을 알 수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</p> <p>나) 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-7일 이내로 인정함.</p> <p>나.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상기에 해당하는 항진균제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(예: 폐렴악화, 발열지속) 2) 누적용량[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] 500mg이상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<p>다.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상기 항진균제 투여 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(혈청크레아티닌(SCr) 수치가 2.5mg/dL를 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사항을 삭제함.

- 51 -

	<p>초과하였거나, 약제투여 전 SCr 수치(약제투여전 수치)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)</p> <p>2) 항진균제 투여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 (SCr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한 경우)</p> <p>3) 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.</p>	
--	---	--

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

구 分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Fluconazole 제제 (품명: 디푸루칸캡슐 50밀리그램, 디푸루칸정맥주사 100mg 등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. 2.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○ 고형장기이식(Solid organ transplantation)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 환자(호중구감소증,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)의 진균감염 예방</p> <p>※ 주사제는 장기이식 수술 후 금식기간 동안에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.</p>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사항을 삭제함.

- 52 -

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Itraconazole 경구제 (품명: 스포라녹스액 등)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.</p> <p>2.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형장기 이식(Solid organ transplantation)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(호중구감 소증,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)의 진균감염 예방 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 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 사항을 삭제함.

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Itraconazole 주사제 (품명: 스포라녹스주사제)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투여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. 2) 혈액종양환자나 풀수이식(BMT)환자의 「호중구감소증의 발열」인 경우는 1차 약제로 인정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여기간 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 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 사항을 삭제함.

- 53 -

	<p>가) 원인을 알 수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</p> <p>나) 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-7일 이내로 인정함.</p> <p>나.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(예: 폐렴악화, 발열지속) 2) 누적용량[Amphotericin B deoxycholate (품명: 훈기존주)] 500mg이상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<p>다.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투여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(혈청크레아티닌(SCr)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하였거나, 약제투여 전 SCr 수치(기저수치)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) 2) 항진균제 투여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 (SCr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한 경우) 3) 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. <p>2.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여대상: 고형장기이식(Solid organ transplantation)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 (호중구감소증,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)의 진균감염 예방 ※ 장기이식 수술 후 금식기간 동안에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.
--	--

- 54 -

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Micafungin 주사제 (품명: 마이카민주사 50mg)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>2. 허가사항 중 식도칸디다증과 칸디다혈증 및 기타 칸디다속에 의한 진균감염(Acute disseminated candidiasis, Candida peritonitis and abscesses) 치료에 투여 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○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 치료에 다음과 같이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.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상기에 해당하는 항진균제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(예: 폐렴악화, 발열지속) 2) 누적용량(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주)) 500mg 이상을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<p>나.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상기 항진균제 투여 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(혈청크레아티닌(SCr)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하였거나 기저 SCr 수치(약제투여 전 수치)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) 2) 항진균제 투여 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(SCr 수치가 2.5mg/dL를 초과한 경우) 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사항을 삭제함.

- 55 -

	3) 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을 참조하여 인정함.	
--	--	--

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Posaconazole(Micronized) 40mg/ml (품명: 녹사필 현탁액)	<p>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○ 침습성 진균감염증의 예방</p> <p>- 장기간의 호중구 감소증이 예측되거나 침습성 진균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이나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관해-유도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의 침습성 진균감염증 예방</p>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사항을 삭제함.

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	사유
Voriconazole 제제 (품명: 브이펜드주사,	<p>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	[일반원칙] 항진균제 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고시사항을 삭제함.

- 56 -

브이펜드정)	<p>가. 주사제</p> <p>1)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</p> <p>2)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이외 침습성 진균감염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 주)의 치료에 다음과 같이 실패하였거나,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- 다 음 -</p> <p>가)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</p> <p>(1) 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 주)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(예: 폐렴악화, 발열지속)</p> <p>(2) 누적용량[Amphotericin B deoxycholate(품명: 훈기존 주)] 500mg 이상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</p> <p>나)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투여 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. <p>나. 경구제</p> <p>1)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</p> <p>2)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이외 침습성 진균감염에는 경우 주사용 항진균제(Amphotericin B, Voriconazole 등) 투여 후 동 경구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</p>
--------	---